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10월 8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. 7.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10. 7.(수)	담당부서	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
담당과장	박용민 과장(043-870-5450)	담 당 자	경도현 연구사(043-870-5452)

산업부, 야외 운동기구 및 전동보드 제품 안전관리 강화

- 야외 운동기구, 전동보드 안전기준 제·개정 고시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**은 ①공원,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**야외 운동기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**를 위해 **'야외 운동기구' 안전기준을 제정**하고, ②전동킥보드 등 **전동보드 제품의 화재사고 대응**을 위해 **'전동보드' 안전기준을 개정**하였다고 밝혔다.

□ **야외 운동기구***는 그동안 손가락, 목, 발 등 **신체 끼임,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**가 지속적으로 발생**하였고, 햇빛, 눈, 비 등 노출로 인한 **제품 노후화**로 **사고 발생 가능성**도 있어, **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.**

* (야외 운동기구 종류) 팔돌리기, 파도타기, 노젓기, 달리기, 오금펴기, 역기내리기, 철봉운동, 평행봉, 허리돌리기, 거꾸로 매달리기 등 (붙임 1 참조)

** (안전사고 건수) ('16년) 61건 → ('17년) 70건 → ('18년) 56건 → ('19년) 52건 (출처: 한국소비자원)

○ 이에 따라, 지난 7월 27일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(이하 전안법)」 시행규칙을 개정·공포하여 **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**하였고, **이번에 제정·고시**하는 **안전기준**과 함께 **2021년 7월27일부터 시행**된다.

* 안전관리 단계: 제품의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, 안전인증, 안전확인, 공급자 적합성 확인, 안전기준 준수 등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

<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 제정 주요 내용>

재료 및 설계.제조 관련 총 13개 항목의 안전요건과 표시사항으로 구성

▶ (재료) 제품부식 방지를 위해 내부석성 금속 또는 방부목 처리 목재 사용 등

▶ (설계.제조) ① 신체끼임 방지를 위해 머리, 목, 손가락, 발, 다리 등이 닿는 운동기구 부위에 대해 일정 간격 이하로 제품을 설계, ② 미끄럼 방지를 위한 표면처리 요건, ③ 사용자의 하중을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한 구조적 요건 등

▶ (표시사항) 운동지침, 기구의 주요기능, 안전 정보 등을 표기

○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라, **2021년 7월27일부터** 제조·수입업자는 **제품의 출고·통관 전에** 반드시 **지정된 시험·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**을 거치고 **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, 제품에 국가통합인증(KC)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**해야 한다.

□ **전동킥보드 등** 전동보드 제품*은 **배터리 화재사고 발생**** 및 배터리 교체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**안전관리를 강화**하는 내용으로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.

* 전동킥보드, 전동스케이트보드, 전동이륜평행차(세그웨이), 전동외륜/이륜보드(전동휠)

** 전동킥보드 화재·폭발 사고(한국소비자원) : ('17년)14건 → ('18년)8건 → ('19년)12건

○ 이번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, **전동보드에 포함되어 관리되던 배터리를 별도 분리하여 관리**하고, 과충전 시험조건을 강화**하는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**최신 국제표준(IEC*) 수준에 맞게 조정**하였다.

* IEC(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) : 국제전기기술위원회로, 1906년 설립되었으며, 전기전자분야에서 국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국제표준화 기관

** (과충전 시험조건) 기존보다 20% 높은 전압을 적용하여 시험

<전동보드 배터리 안전기준 개정 주요 내용>

▶ 전동보드 제품과 함께 안전성 시험을 해오던 전동보드용 배터리를 전기용품으로 별도 분류하여 KC 안전확인 신고(KC 62133-2 안전기준)를 하도록 규정

▶ 전동보드 배터리 교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, 이에 관해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*을 제품 또는 설명서에 안내토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인식을 제고

* ① KC 안전확인신고된 배터리 사용 ② 이전 전동보드에 사용된 배터리와 전압·외관 등 동일 사양의 배터리를 사용

○ **개정된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**되며, 이에 따라 **종전 안전기준에 의해 안전확인 신고를 하였어도 시행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전동보드**에 사용되는 **배터리에 대해서는** 개정된 규정에 따른 **전기용품 국가통합인증 안전확인신고를 완료**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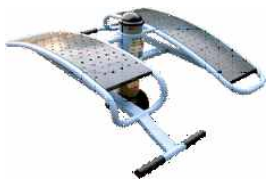
□ 이번에 제·개정된 야외운동기구 및 전동보드 **안전기준 전체 내용**은 **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**와 **법제처 법령정보센터**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경도현 연구사(043-870-545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야외 운동기구의 종류 및 형태

□ 야외용 운동기구의 종류 및 형태 일부 예시

공중걷기	파도타기	노젓기	달리기
			
다리근육풀기	오금펴기	윗몸일으키기	팔돌리기
			
역기내리기	철봉운동기구	평행봉	매달려온몸비틀기
			
허리돌리기	등허리운동기구	거꾸로 매달리기	등허리지압
			

붙임 2 전동보드 제품 종류 및 배터리

□ 전동보드 제품에 사용되는 배터리 (별도 KC 안전확인 신고 필요)

